

2021년 어린이집 확인점검 실시 안내

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**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특정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.**

2021년 확인점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코로나19 종식 및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소중한 일상복귀를 위해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어린이집 평가와 확인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,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함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(또는 확인점검)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·변경 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 6호).

1. 확인점검 대상

⇒ 평가 후(또는 인증유지) 어린이집에서 **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**되는 경우

-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**민원 발생** 어린이집
- ② **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**한 어린이집 중 **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**
 - 법 제45조의 2(과징금 처분),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,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
- ③ **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**한 어린이집
- ④ **정보공시 항목(7개 항목, 18개 범위)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**한 어린이집
 - <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> 155 ~ 157P 참고
- ⑤ 평가지표 3영역 건강·안전 **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**한 어린이집

《 3영역 건강·안전 8개 필수요소 》

3-2-2-1	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
3-2-2-2	유통기한 경과 식품(식자재 등)이 없음
3-2-3-3	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
3-4-1-4	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
3-4-2-4	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
3-4-3-4	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
3-5-2-1	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(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)
3-5-2-4	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(체벌 금지 포함)을 준수함

- ⑥ **중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(인증) 결과를 승계**한 어린이집('20.3.1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)
- ⑦ **(신설)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'개선필요' 인 어린이집**('21.3.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)

2. 확인점검 확인내용 및 진행절차

⇒ **확인내용** : 평가지표(4영역 18지표 59항목), 어린이집 운영기준(영유아 재원사항,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)

※ 확인점검을 거부, 방해, 또는 기피할 경우, 시정 또는 변경명령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)

※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, 최하위 등급(D등급) 부여 및 평가 주기 조정, 시정 또는 변경명령(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) 가능

⇒ **진행절차** (소요시간 : 시작 9:00~9:30 / 종료 16:30~17:30)

- ① 확인점검자가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을 불시 방문(점검당일 공문 전달)
- ② 영유아 재원사항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, 하루일과표, 실내외 배치도 등을 확인 후 점검 실시
- ③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(인가공간)을 관찰하며, 관찰, 기록(문서) 검토,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점검 진행
- ④ 확인점검 상호확인서 작성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 종료
- ⑤ 확인점검월 익월 초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 진행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
- ⑥ 결과통보: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 결과 개별 통보(확인점검월 기준 2개월 후)
(예: 4월 확인점검 진행 → 5월 초 확인점검 설문조사 → 6월 중순 결과통보)

3. 확인점검 결과통보

내용	결과통보
◆ 확인점검 결과 ◆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◆ 1개 이상 영역이 '개선필요' 인 경우 ◆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	어린이집 통보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보

4. 확인점검 결과활용

①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'개선필요' 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→ **지자체로 통보,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(확인점검 대상으로 재선정*)**

* 확인점검 대상(⑧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'개선필요' 인 어린이집) 참조

②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'개선필요' 인 경우 → **평가등급 및 평가 주기를 조정될 수 있으며, 사후방문지원 연계**

※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,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'개선필요' 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

《 어린이집 준비 서류 》 현장평가 준비 서류와 동일, 2021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31P 참조

- 원아명단,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(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),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 보육계획안(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), 보육교직원(원장, 보육교사) 자격증 사본 및 임면사항 관련 서류(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, 임면대장 등),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(경력증명서,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), 평가지표 관련 문서(예. 보육계획안, 보육일지, 식단표 등)

※ 보육일지는 확인점검 월 기준 1개월 전부터의 기록 확인, 그 외의 기록(문서)는 3개월 전부터의 기록 확인. 단,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전년도 기록 확인 가능

※ 원아명단,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,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은 확인점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(재정 관련 서류 등)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

《 2021 어린이집 평가 관련 자료 》

-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kcpi.or.kr>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관련자료
-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(<http://kce.kcpi.or.kr>)